

# 안전관리규정

2004.10.25 제정, 2005.7.8 개정  
 2006.4.1 개정, 2007.9.1 개정  
 2009.4.1 개정, 2013.3.1 일부개정  
 2015.11.1. 일부개정  
 2018.12.20. 일부개정  
 2019.04.01. 일부개정  
 2019.09.01. 일부개정  
 <안전관리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 내 안전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자산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 구성원(교직원, 학생, 연구원) 및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과 전체시설 및 부대 장비에 적용 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사고”란 불안정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3. “재해”란 사고의 최종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사고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다. 부상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경우

5. “안전관리”란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안전업무 우선) 각 대학(원) 및 행정부서의 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 5 조 (조직) ① 교내에서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포함한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두고 그 책임자는 교무부총장으로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운영하며, 분야별 주관부서에는 각각의 안전관리책임자(학장, 처장급) 및 안전관리자를 둔다(별첨 1. 안전관리 조직도 참조).

③ 교내 각 건물 내 각 실에는 안전담당자(정, 부)를 둔다.

제 6 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본교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 7 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사항을 담당한다.

1. 분야별 주관업무 및 각 대학(원), 행정부서, 부설기관 안전관리업무 총괄

2. 비상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3.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제 8 조 (안전관리자) 본교 분야별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분야별 해당 작업장(연구(실험)실)에 대한 위험성 대비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이행
2. 안전장비, 보호구, 소화설비 등 기타 위해방지 시설 및 장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
3.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4.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
5.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비치
6.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처리
7. 기타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
8. 관련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9.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제 9 조 (안전담당자) 건물 내 실별 지정된 안전담당자(정, 부)는 관리 공간 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책임과 의무) 본교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정, 부)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부설기관은 기관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자체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 3 장 안전교육 및 관리

제 11조 (안전교육) 교내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 등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 12조 (화재예방 및 교육)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교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관리)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따로 정하는 바는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조 (환경오염물질 관리) 환경오염물질 처리 및 관리는 본교 “환경오염물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5조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안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관리는 본교 “보안시스템 개인정보관리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조 (방사성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방사선 물질 및 장비 취급 시 본교의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조 (전기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전기시설 취급시 “전기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조 (가스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가스시설 취급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 장 위해 방지

제 19조 (작업장 안전조치 강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실/전기실 등 제한/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허가된 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 비품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운전 중, 수리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 적절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소관부서는 주관부서에 안전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으로 정의되는 공간(지하공간, 정화조 시설 등)에서 작업 시에는 항상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0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전기시설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산 및 소모품에 대한 화재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설공사의 수행 등 화기사용에 따른 위험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화기 등의 관리)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성능보장 및 안전장치)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의 안전관리자 또는 소관 안전담당자(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2조 (소화설비의 비치) 소화용기구와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 23조 (구급용구의 비치)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에 오염된 직원 및 학생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필요한약품, 구급용 기구 및 재료를 그 부서의 소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안전관리위원회

제 24조 (위원회) 이 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제 25조 (목적) 이 위원회는 본교의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과 장·단기 발전과제를 연구하고 그 실행방안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6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내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2. 학내 교육/연구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비 및 관련 인력관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 및 환경에 관한 사항
5. 학내 연구실(LMO 연구실 포함)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학내 연구실 사고예방 및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캠퍼스안전 추진단 논의 및 심의 안전에 대한 의결
8.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의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에 수반된 사항

제 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의 부(팀)장을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또한 위원회의 기록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관리처장, 위원은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생명과학대학장, 이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정보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방사선안전관리센터장, 안전관리팀장(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총무부장(보안·경비), 건축팀장(공사장 안전), 학생복지부장(식중독, 감염병),

학생지원부장(학생안전), 병무행정팀장(민방위), 연구윤리센터 팀장(LMO안전), 시설운영팀장(시설물 안전),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안전관리자(방사선 안전), 안전관리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 안전)로 구성한다.

제 28조 (임기)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위원의 직무가 지속될 때는 별도 재위촉 없이 임기가 연장된다.

제 29조 (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실무위원은 회의 진행 시 분야별 안전사항이 있는 경우 참석한다.

제 31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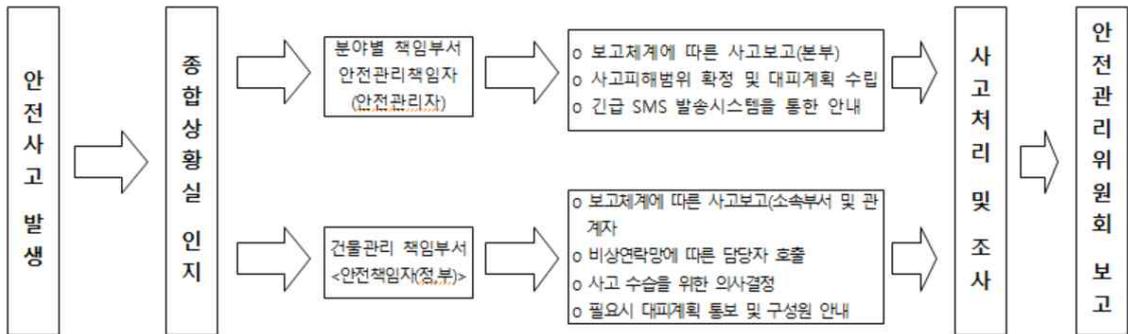
제 6 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제 32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별지의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책임자(정.부)는 재해발생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보고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④ 사고 발생시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표할 수도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계통도 및 역할>

⑤ 안전사고 발생 시 분야별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한다.

- 안전관리총괄책임자(안전관리위원회)에게 즉시(직접)보고 : 실제 사고 발생으로 관공서(소방서, 경찰서 등)의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안전관리위원회 종합보고(교내 사건·사고보고) : 사고수준이 경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

제 33조 (사고후속조치)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각 행정부서 및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관련 유관부서(총무부, 건축팀, 시설운영팀) :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 협조

2. 공간관리 주관부서(건축팀) 및 각 단과대학 : 사고로 인하여 학사행정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지원 협조

제 34조 (손해배상의무) 교직원 및 학생,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고의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실로 인해 사고,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5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36조 (세칙)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5장 안전관리위원회 신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7조 제2항, 제3항, 제29조 개정)
- 2. (경과조치) ① 제27조 제2항, 제29조의 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라 2013년 1월 12일자로 적용한다.
  - ② 제27조 제2항, 제29조의 개정은 대외부총장의 행정대외부총장으로의 명칭변경 및 부총장 업무분장에 따라 2012년 9월 1일자로 적용한다.
  - ③ 제29조의 개정은 기획평가팀의 기획팀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라 2012년 9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 1.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현실에 맞게 자구조정)

부 칙

- 1.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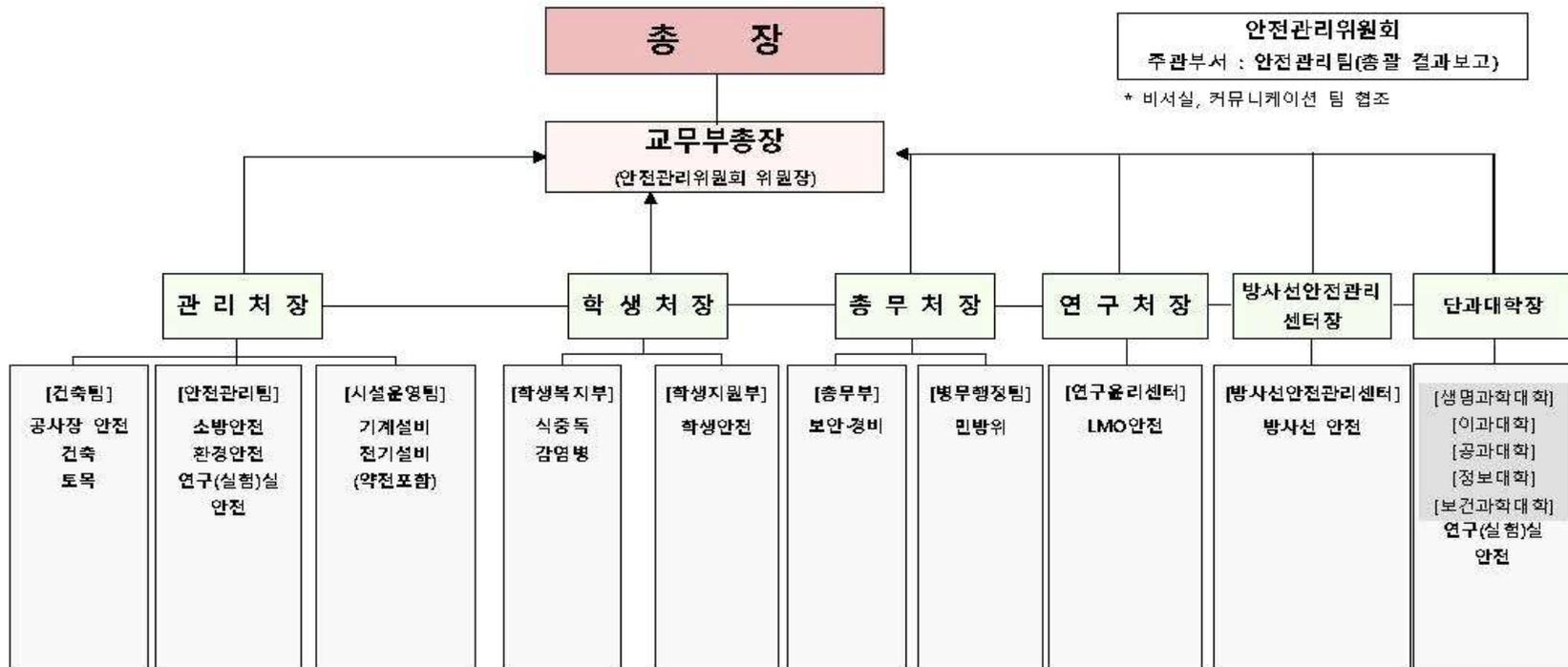
[별첨 1]



안전관리위원회 조직도

관리처 안전관리팀

→ : 사고발생시 보고계통도



안전관리위원회  
주관부서 : 안전관리팀(총괄 결과보고)  
\* 비서실, 커뮤니케이션 팀 협조

- ※ 분야별 담당자를 "안전관리자"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절차에 의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및 보고는 각 분야별 담당자가 대응하며, 안전관리위원회 주관부서는 이에 협조한다.
- ※ 단과대학장은 사고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주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상부보고 협조 등)